



(뒤 쪽)

※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(매도·임대 등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Ⅰ.권리이전용(매도·임대 등)」에 기재하고, 권리를 취득(매수·임차 등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Ⅱ.권리취득용(매수·임차 등)」에 기재합니다.

Ⅰ. 권리이전용(매도·임대 등)

구 분	매도·임대·기타( )						
소유자 및 등기명의인	성 명			주민등록번호/ 외국인등록번호			
	주 소						
중개대상물의 표시	건축물	소재지				건축연도	
		면적	m <sup>2</sup>	구 조	용 도		
	토 지	소재지				지 목	
		면적	m <sup>2</sup>	지역·지구등	현재용도		
은행용자·권리금·제세공과금 등 (또는 월임대료·보증금·관리비 등)							
권 리 관 계							
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							
중개의뢰금액	원		기 타				

Ⅱ. 권리취득용(매수·임차 등)

구 분	매수·임차·기타( )	
항 목	내 용	세 부 내 용
희망물건의 종류		
취득희망가격		
희 망 지 역		
그 밖의 희망조건		

<별표> 중개수수료 요율표(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요율표 수록)

※ 해당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, 별지로 첨부합니다.

[중개업자 위법행위 신고안내] 중개업자가 수수료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시 시·군·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, 시·군·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